

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1. 감사목적

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·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,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

- ※ 관련법규      ○ 지방자치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

2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 시	감 사 대 상 기 관	장 소	비 고
2003.12. 6(토) 10:00~13:40	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	운영위원회 회의실	

3. 감사대상기관

위원회 선정대상기관	본회의 의결대상기관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	없 음

4. 감사위원회 편성

구 분	소속정당	위 원 명	사 무 보 조 직 원
위 원 장	한나라당	박 주 응	전문위원 이 청 수 · 5급 이 재 덕 · 6급 조 성 천 · 7급 이 계 홍  안내직원 기능9 김갑연 기능9 이금선  속기사 (2명)  녹취요원(2명)
간 사	한나라당 우 리 당	김 춘 수 서 승 제	
위 원	한나라당	김 민	
"	"	김 유 현	
"	"	김 종 문	
"	"	류 성 열	
"	"	신 영 선	
"	"	이 은 석	
"	"	이 한 기	
"	"	임 동 규	
"	"	임 승 업	
"	"	정 창 희	
"	민 주 당 우 리 당	민 연 식 손 석 기	

## 5. 주요감사사항

기관명	감사방법	주요감사사항
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자료확인</li> <li>○ 현황보고청취</li> <li>○ 시책질의·답변</li> <li>○ 서류 또는 현장 확인</li> <li>○ 기 타</li> </ul>	<p>〈공보실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회홍보 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언론매체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보도자료 제공 총괄·분석 및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회보 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정홍보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전산실·홈페이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원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회관련 자료의 수집·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정보니터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자료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 <p>〈의정담당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원등록, 기록관리 및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원 국제친선 교류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사무처 조직·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감사, 심사분석, 사무개선업무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회의전에 관한 사항, 예산의 편성·집행·결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사당 시설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사당 경비에 관한 사항,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물품수급 및 차량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문서·보안 및 관인·공인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 <p>〈의사담당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사운영계획 수립·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회의록 작성, 발간, 배부,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각종 의안처리 및 의결문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청원·진정서 접수·처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안심의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자치법규 등의 기초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회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본회의장 사용·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회의장 질서유지,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위원회관련 통계자료 작성·발간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의원 및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 <p>〈기타사항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위원이 의정활동 및 시정과 관련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</li> </ul>

6. 감사결과

가. 총괄

부서명	계	시정요구사항	조치사항	건의사항	기타 (자료제출)
계	12	8	28	6	-
공보실	13	1	10	2	-
의정담당관	24	5	16	3	-
의사담당관	5	2	2	1	-

나. 시정요구사항 ..... 8 건

-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하여 행정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감사자료가 제 기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함.
- 의원 해외 비교시찰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진, 방문일정 등 준비단계부터 점검하는 등 해외비교시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.
-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오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강구.
- 물품구매, 공사입찰에 있어서 부분 발주 및 구매를 지양하고 일괄발주나 집중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.
- 민원 및 청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의사당을 불법 점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강구.
-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1명씩 시의회보 편집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, 편집위원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시정.
- 2004년 국제교류사업계획 및 방문의원 선정 등의 내용을 회람하거나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참가의원 선정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.
- 시의회와 전체의원과 관련된 사항(비품구입 등)에 대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시정바람.

다. 처리요구 ..... 28건

- 의회본관 1층 로비를 방문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, 의정활동 및 본 건물의 역사적 사건·일화 등 관련자료를 비치하여 휴게실 및 의회 홍보의 장으로 운영하는 방안마련.
- 본관건물 후면 주차장의 바닥, 차량진입시설, 쓰레기통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.
- 의원의 정보화교육 시 PC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의원의 전산능력 제고방안 강구.
- 공공기관, 언론사 등 주요기관의 홈페이지와 시의회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어느 기관에서도 우리 의회와 접속할 수 있는 방안검토, 아울러 시의원 개인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경비 지원검토.
- 의정보니터는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는 등 의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바, 의정보니터가 제출한 미답사례 및 우수사례 등을 의회보 게재하고, 모니터에 대한 교육 및 공청회 참

- 석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 방안 검토.
- 본격적인 인터넷 생중계 실시이전에 운영위원회에 시연을 하고,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람.
  - 의원 전산정보화 교육 참석률이 저조함. 의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기의 탄력적인 운영방안 검토.
  - 장애인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. 본관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 검토.
  - 본관 지하에 설치된 직원 체력단련실이 열악함. 여자 샤워실 및 환기시설 설치 등 쾌적한 체력단련실이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.
  - 시의회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타부서로 진출할 때 희망부서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,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의회에 올 수 있는 전입기준 방안 마련.
  - 지역신문사의 협조를 받아 우리 의회발전과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 마련.
  -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원과 조례 제·개정사항을 알기 쉽게 의회보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 강구.
  -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
  -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정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. 시대요청에 맞게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의회발전을 위해 사고진환 필요.
  - 한·몽의원연맹」 등 비공식 의원간 국제교류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대외에 홍보하는 만큼 경비의 일부 지원 가능여부 검토.
  - 현재 운영중인 의정보 모니터 지정과제와 병행해서 자유과제를 부여하여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, 우수의견 포상제 실시 및 의회보에 게재하는 등 의정보 모니터 운영방안 개선.
  -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실시 확대 추진,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등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.
  - 청소년의회교실운영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임. 우리 의회에서 실제 있었던 의회 의장선출 및 안건처리 과정 등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서 현장학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프로그램 개선.
  - 자기 취향에 맞는 변기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시설 개선할 때 비대기·양변기·좌변기를 구분·설치하고, 위생용 변기용 페이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.
  -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은 의회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므로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 처리결과 보고.
  - 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며, 타부서 진출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
  - 의원들의 연구증진을 위해 서울산업대학과 관학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와도 협정체결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.
  - 의원의 노트북 교체에 따른 기존 노트북에 대해 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희망하는 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활용 방안 마련.
  - 현재 비공식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한몽의원연맹 및 한일의원연맹 등을 공식적인 의원단체로 편입하여 예산·행정지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바람.
  - 직원의 체력단련실을 1억 3,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

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의회에서 수여하는 녹색어머니상 등 각종 표창 부상품은 오랫동안 보존 가능하고 의회 위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상품 선정 검토.
  -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사무처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의원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당부.
  - 시의회는 집행부서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데 업무추진시 강시장, 약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음.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의회위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음.
- 라. 건의사항 ..... 6건

-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많은 의원이 시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.
- 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. 특별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및 인력지원 방안 검토.
- 시의회는 정당정치가므로 교섭단체가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지원예산이 부족한 것 같음. 예산 확대 지원방안 검토.
-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동정상황을 시정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시의원들을 소개하는 방안 강구.
- 의원들의 해외여비가 실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, 해외여비 상향조정 검토. 또한 해외 여행관련 공금사항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.
- 시의원들이 보좌관이 없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. 일간지·인터넷 등에 게재된 의정 및 시정관련 주요사항을 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안 검토.

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

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고, 시정 및 처리요구,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시정·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함.

I. 감사개요

1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6조, 제38조
-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, 제19조의4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-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

2. 감사주체 : 서울특별시의회(각 상임위원회별)

3. 감사기간 : 2003. 11. 21(금)~11. 30(일) <10일간>

- ※ 제25회 정례회 의사일정
- 회기 : 2001.11.20(목)~12.19(금) <30일간>

4. 감사장소 :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감사기관

5. 감사중점사항

- 2002.11~2003.10. 31 기간 중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-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, 시정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
- 사업진행의 공정성, 효율성, 능률성 등과 관련된 사항
- 시민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